

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363

제출연월일 : 2005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「바이오토피아 충북」 조기실현을 위해 첨단산업육성 지원사업을 추가하고, 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및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첨단산업육성 자문기구인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, 첨단제품개발 평가·시험 비용 지원 및 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바이오상품 판매촉진 사업을 추가 함
- 첨단산업육성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략산업 육성 전문기관에 위탁하고,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
- 첨단산업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을 9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조정 함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참고자료 : 붙임

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첨단산업육성지원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첨단산업 지원 등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·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첨단산업 신기술 연구 개발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
2. 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등 벤처창업 지원
3. 첨단제품기술 산업화 및 첨단산업 정보화 지원사업
4. 첨단산업관련 창업보육,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,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
5. 첨단기술 인력확보, 대학내 기술특화연구사업, 제품인증 사업
6. 세미나, 해외 교류·시장 진출사업, 홍보지원사업
7. 첨단제품의 개발 단계별 평가·시험비용 지원
8. 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바이오상품 판매촉진 지원사업

②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중 “90인 이내”를 “30인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2조(첨단산업 지원 등) 충청북도지사 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보조·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첨단산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과제 공모사업 2. 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등 벤처창업 지원 3. 첨단제품기술 산업화 및 첨단산업 정보화 지원사업 4. 첨단산업관련 창업보육,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,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5. 첨단기술 인력확보, 대학내 기술특화 연구사업, 제품인증 사업 6. 세미나, 해외 교류·시장 진출사업, 홍보지원사업 등 	<p>제2조(첨단산업 지원 등) ①충청북도지사 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·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첨단산업 신기술 연구 개발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 2. 산·학·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등 벤처창업 지원 3. 첨단제품기술 산업화 및 첨단산업 정보화 지원사업 4. 첨단산업관련 창업보육,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,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5. 첨단기술 인력확보, 대학내 기술특화 연구사업, 제품인증 사업 6. 세미나, 해외 교류·시장 진출사업, 홍보지원사업 7. 첨단제품의 개발 단계별 평가·시험 비용 지원 8. 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바이오상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<p>②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③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협약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</p>			
<p>제5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를 전체위원회라 칭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제5조(구성) ①..... 30인 이내..... 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			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 제95조 (사무의 위임 등)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 제14조 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4.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(공공기관의 범위 등)

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"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□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(보조대상)

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(과학기술부) 제2조 (용어의 정의)

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“전문기관”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·평가·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.

□ 지역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 요령(산업자원부) 제7조(전담기관)

①제3조의 규정에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(전담기관이라 함은 지역산업기술혁신사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·관리 업무를 지원·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)을 둘 수 있으며,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기관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전담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의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참 고 자 료

□ 첨단산업 육성사업의 사업화 지원 강화

- 세계 챔피언 급 스타제품 개발 및 선도 기업 육성
 - R&D 지원에서 제품의 사업화 위주로 지원 강화
- 바이오제품의 개발 단계별 평가·시험비용 지원
 - 제품개발비용의 40%, 개발기간의 50%가 소요되는 안전성 시험 비용 등을 지원하여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강화
- 바이오우수제품 품질인증제 등 상품판매 촉진사업 추진
 - 품질인증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 및 상품 판매 촉진 기대

□ 전문기관 위탁 및 소요경비 지원

- 기획, 평가, 선정, 관리, 정산, 기술실시계약, 기술료징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단위 업무에 다수의 행정인력이 업무 수행하여 업무 비효율
- 대상사업이 매년 증가하여 관리가 어려움

구분	'02년	'03년	'04년	'05년	비고
대상사업	12 (12)	23 (11)	34 (11)	41 (7)	

- 전문가를 보유한 전략산업육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
 - 산자부는 산업기술평가원, 과기부는 과학기술평가원에 위탁

□ 첨단산업육성위원회 구성인원 조정

- 첨단산업육성위원회 6개 분과 90명 → 2개 분과 30명 조정
- 기능이 유사한 분과를 통·폐합하여 효율성 제고